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19. 9. 26.(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이홍민 의원 외 7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이홍민 의원 외 7명
- 제안일 : 2019. 9. 17.
- 회부일 : 2019. 9. 17. (의안번호 : 19 -136)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공공갈등영향분석(안 제6조)
- 갈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갈등관리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안 제13조)
- 갈등관리실태의 평가(안 제18조)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이홍민 의원 외 7인에 의해 발의되어 행정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함.
-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이익의 비교형량,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위원회 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 등, 심의결과의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비상임 공공갈등조정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까지 비밀유지, 갈등관리메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수당지급 등에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0조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관리 비용에 사용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모든 국민이 매년 900만원씩을 쓰는 것으로 국가 전체로 따지면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하는 바 갈등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감소, 사회통합의 저해, 정부 신뢰의 감소와 같이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문화적인 부정적 영향은 심각한 수준임.

- 마포구도 공공갈등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립, 당인동 화력발전소 지하화건립, 경의선숲길, 홍대걷고싶은거리 광장조성 및 지하주차장건립, 상암동 롯데백화점 개설, 합정동 홈플러스 개설, 광역등기소 건립,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갈등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비가 조금씩 내릴 때 어느 정도 내릴지 예측해보고 많은 비가 왔을 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다면 들이닥친 문제에 대하여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갈등조정은 대화를 바탕으로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등 행정 가치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합법성, 사회적 수용성, 실행가능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이에 본 제정안은 마포구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됨.